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 . .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 외 8명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 . . .

발 의 자 : 장미경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상
김춘남 · 김태근 · 양진오 · 장세구
최경동 의원(9인)

1. 제안이유

경북 무형문화재 제40호인 무을농악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무을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립농악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미시립예술단의 종류에 구미시립농악단 신설(안 제2조)

- 구미시립농악단 : 예술감독 1명과 단원 50명 이내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미시립농악단: 예술감독 1명과 단원 50명 이내

제3조제3항 중 “각 단의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는”을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및 예술감독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을 “각 단”으로, “연출자”를 “연출자,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휘자·안무자·연출자와”를 “지휘자·안무자·연출자·예술감독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 을 둔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구미시립농악단: 예술감독 1</u> <u>명과 단원 50명 이내</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 ② (생 략)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u>각 단의 지휘자, 안무자 및</u> <u>연출자는</u>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한다.	③ <u>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u> <u>까지의 각 단(이하 "각 단"이라</u> <u>한다)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u> <u>및 예술감독은</u> -----.
제4조(단원 등의 구분) <u>제2조제2</u> <u>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이</u> <u>하 "각 단"이라 한다)의 지휘자,</u> 안무자, <u>연출자</u> 및 단원(이하 " 단원 등"이라 한다)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제4조(단원 등의 구분) <u>각 단</u> ---- ----- ----- ----- <u>연출자, 예술감독</u>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 술과장, 각 단의 <u>지휘자·안무 자·연출자와</u>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 ----- ----- ----- <u>지휘자·안무 자·연출자·예술감독</u> 및 ----- -----.
--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시립농악단 창단 시 공연수당, 직책·연습수당, 명절휴가비, 운영비 등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2조제2항제6호)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시립농악단 창단 시 예상되는 최소한의 소요예산(공연수당, 직책·연습수당, 명절휴가비, 운영비 등)을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 1) 공연수당 : 59,160천원
- 2) 직책·연습수당 : 732,000천원
- 3) 명절휴가비 : 51,000천원
- 4) 운영비(악기 및 의상구입) : 41,594천원

나. 추계기간은 2020년 한 해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합 계
세출	○ 공연수당	59,160	59,160
	○ 직책·연습수당	732,000	732,000
	○ 명절휴가비	51,000	51,000
	○ 운영비(악기 및 의상구입)	41,594	34,380
	합 계	884,114	884,11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884,114	884,114
민 간		
기 타		
합 계	884,114	884,114

5. 부대의견

가. 본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 1) 시립농악단 정원 변동 및 직책자 등 임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감
- 2) 시립농악단 추가 운영예산
- 3) 시립예술단 노·사 간 임금협상, 물품단가 변동 등

6. 작 성 자 :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담당 허광호(480-456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공연수당

공연수당은 시립농악단 예술감독 1명, 일반단원 50명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정기공연 횟수는 반기별 1회를 기준으로 연 2회로 산정함.

수시공연 횟수는 월 1회를 기준으로 연 12회로 산정함.

가. 정기공연 $100,000\text{원} \times 51\text{명} \times 2\text{회} = 10,200,000\text{원}$

나. 수시공연 $80,000\text{원} \times 51\text{명} \times 12\text{회} = 48,960,000\text{원}$

2. 직책 및 연습수당

직책·연습수당은 시립농악단 예술감독 1명, 일반단원 50명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지급횟수는 월 1회를 기준으로 연 12회로 산정함.

가. 예술감독 $2,500,000\text{원} \times 1\text{명} \times 12\text{개월} = 30,000,000\text{원}$

나. 단 원 $1,170,000\text{원} \times 50\text{명} \times 12\text{개월} = 702,000,000\text{원}$

3.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시립농악단 예술감독 1명, 일반단원 50명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지급횟수는 반기별 1회를 기준으로 연 2회로 산정함.

가. 명절휴가비 $500,000\text{원} \times 51\text{명} \times 2\text{회} = 51,000,000\text{원}$

4. 운영비(악기 및 의상 구입)

운영비는 악기 및 의상 구입 등 최소한의 운영 예산으로 추계했으며, 악기 및 의상 구입비 산출내역은 광명시립농악단(2010년 창단), 정읍시립농악단(1991년 창단, 2011년 재정비) 예산서를 참고함.

가. 악기 $16,500,000\text{원} \times 1\text{식} = 16,500,000\text{원}$

나. 의상(연습복 포함) $500,000\text{원} \times 51\text{명} = 25,500,000\text{원}$